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7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20.

발의자 : 김승남 · 김영호 · 노옹래
문정복 · 신현영 · 어기구
용혜인 · 윤미향 · 윤재갑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2012년부터 경매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·수의매매를 도입·운영하고 있으나, 거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,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, 경매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,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,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출하자의 농어민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화는 물론,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·수의매매,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,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정가·수의 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고, 경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래방법 및 절차 등을 잘못 운영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82조제4항제4호 신설).
- 나. 표준송품장에 전자문서 형태의 것(전자송품장)도 포함시키도록 함(안 제41조제2항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1조의2).
- 라. 도매시장 개설자는 판매원표 정정 현황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며,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마.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,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,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운영 내용을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(안 제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·제5항 신설).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·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

제41조제2항 본문 중 “標準送品狀)”를 “標準送品狀,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매시장 개설자는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”으로, “공동으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한다.

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의 정정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

무규정으로 정한다.

제78조의2제1항 중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두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정위원회의”를 “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의 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, 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 · 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,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 · 제시 등을 위한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, 분쟁조정관의 임명 또는 위촉자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(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)의 차년도 운영계획, 전년도 개최실적,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정가 · 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.</p>	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1조의2(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) <u>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·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, 회사 등(이하 “대금정산조직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1조의2(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)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</u></p>
<p>1. · 2. (생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6조(실태조사 등) (생략)</p>	<p>제76조(실태조사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② <u>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의 정정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설></p>	<p>③ <u>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</u></p>

제78조의2(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 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(생 략)

③ 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
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
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
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의
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
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
하며, 그 밖에-----
-----.

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
심의·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
단,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·제
시 등을 위한 분쟁조정관을 둘
수 있으며, 분쟁조정관의 임명
또는 위촉자격 및 운영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
